2022 객관식세법(이승원・이승철 저, 나무경영아카데미) 추록 및 정오표(3) – 7. 29. 현재

I. 수정사항 개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이 2022년 6월 말에 개정되었으며,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탁관련 납세의무자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투자신탁은 위탁자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을 투자·운용하는 점을 감안하여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통제·지배하는 경우로서 위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사유에 추가함

(2)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확대

①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중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데친 채소류・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게장・두부・메주・간장・된장・고추장을 2023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포장여부와 상관없이 부가가치세를 면세함

② 커피・코코아두 등을 수입시 2023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세함

(3)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확대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계산시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한도 적용률을 기존 적용률에서 10%p 상향 조정함

II. 수정사항

<table>
<tr><th>Page</th><th>행</th><th>수 정 전</th><th>수 정 후</th></tr>
<tr><td rowspan="3">3-6</td><td>하15</td><td>~・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인 ~)</td><td>~・소규모재건축사업・소규모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td></tr>
<tr><td>하13</td><td>~・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대행자인 ~)</td><td>~・소규모재건축사업・소규모재개발사업의 사업대행자인 ~)</td></tr>
<tr><td>하9</td><td>< 추 가 ></td><td>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경우</td></tr>
<tr><td>3-57</td><td>상15</td><td>* 단순가공식료품에는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을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td><td>* 단순가공식료품에는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공급하는 것을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td></tr>
<tr><td>3-61</td><td>하9</td><td>① 미가공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축・수・임산물 포함)</td><td>① 미가공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축・수・임산물 포함, 커피・코코아두는 제외). 다만,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업하는 커피・코코아두는 면세함.</td></tr>
<tr><td>3-68</td><td>하7</td><td>~ 직접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td><td>~ 2023년 12월 31일까지 직접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면세한다.</td></tr>
<tr><td>3-73</td><td>하3</td><td>~ 단순가공식료품을 거래단위로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한다.</td><td>~ 단순가공식료품을 거래단위로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한다. 다만, 2023년말까지는 거래단위로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한다.</td></tr>
<tr><td>3-105</td><td></td><td>< 추 가 ></td><td>(3)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업하는 커피두는 면세재화이지만, 해당 문제에서는 과세재화인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한다.</td></tr>
<tr><td rowspan="2">3-144</td><td>하18</td><td><table>
<tr><th colspan="2" rowspan="2">구 분</th><th colspan="2">적용률</th></tr>
<tr><th>음식점업</th><th>이외 업종</th></tr>
<tr><td rowspan="3">개인사업자</td><td>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경우</td><td>65%</td><td rowspan="2">55%</td></tr>
<tr><td>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경우</td><td>60%</td></tr>
<tr><td>과세표준이 2억원 초과인 경우</td><td>50%</td><td>45%</td></tr>
<tr><td colspan="2">법인사업자</td><td>40%</td><td>40%</td></tr>
</table></td><td><table>
<tr><th colspan="2" rowspan="2">구 분</th><th colspan="2">적용률</th></tr>
<tr><th>음식점업</th><th>이외 업종</th></tr>
<tr><td rowspan="3">개인사업자</td><td>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경우</td><td>75%</td><td rowspan="2">65%</td></tr>
<tr><td>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경우</td><td>70%</td></tr>
<tr><td>과세표준이 2억원 초과인 경우</td><td>60%</td><td>55%</td></tr>
<tr><td colspan="2">법인사업자</td><td>50%</td><td>50%</td></tr>
</table></td></tr>
<tr><td>하13</td><td>참고 ~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40%를 적용하며, ~</td><td>참고 ~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50%를 적용하며, ~</td></tr>
</table>

<table>
<tr><td rowspan="4">3-145</td><td rowspan="4">상18</td><td colspan="2">구 분</td><td>적용률</td><td colspan="2">구 분</td><td>적용률</td></tr>
<tr><td rowspan="2">개인사업자</td><td>1역년 과세표준이 4억원 이하인 경우</td><td>55%</td><td rowspan="2">개인사업자</td><td>1역년 과세표준이 4억원 이하인 경우</td><td>65%</td></tr>
<tr><td>1역년 과세표준이 4억원 초과인 경우</td><td>45%</td><td>1역년 과세표준이 4억원 초과인 경우</td><td>55%</td></tr>
<tr><td colspan="2">법인사업자</td><td>40%</td><td colspan="2">법인사업자</td><td>50%</td></tr>
<tr><td>3-179</td><td>상5</td><td colspan="3">~ 44 ④</td><td colspan="3">~ 44 ③</td></tr>
<tr><td rowspan="5">3-183</td><td>상11</td><td colspan="3">② 한도 : ~ ×40% ~ =₩1,568,627</td><td colspan="3">② 한도 : ~ ×50% ~ =₩1,960,784</td></tr>
<tr><td>상19</td><td colspan="3">~ ×40%* ~ =₩3,137,254</td><td colspan="3">~ ×50%* ~ =₩3,921,568</td></tr>
<tr><td>상20</td><td colspan="3">~ 40%를 적용한다.</td><td colspan="3">~ 50%를 적용한다.</td></tr>
<tr><td>상21</td><td colspan="3">(4) 의제매입세액 : ~ ₩3,137,254 ~</td><td colspan="3">(4) 의제매입세액 : ~ ₩3,921,568 ~</td></tr>
<tr><td>하1</td><td colspan="3">② 한도 : ~ ×40% ~ =₩627,450</td><td colspan="3">② 한도 : ~ ×50% ~ =₩784,313</td></tr>
<tr><td rowspan="2">3-188</td><td>상1</td><td colspan="3">b. 한 도 : ~ ×65%* ~ =₩3,220,183</td><td colspan="3">b. 한 도 : ~ ×75%* ~ =₩3,715,596</td></tr>
<tr><td>상2</td><td colspan="3">~ 65%를 적용한다.</td><td colspan="3">~ 75%를 적용한다.</td></tr>
<tr><td rowspan="5">3-189</td><td>상16</td><td colspan="3">③ 의제매입세액 : Min[a, b]=₩705,882</td><td colspan="3">③ 의제매입세액 : Min[a, b]=₩740,000</td></tr>
<tr><td>상18</td><td colspan="3">b. 한 도 : ~ ×40% ~ =₩705,882</td><td colspan="3">b. 한 도 : ~ ×50% ~ =₩882,352</td></tr>
<tr><td>상19</td><td colspan="3">~ 40%를 적용한다.</td><td colspan="3">~ 50%를 적용한다.</td></tr>
<tr><td>상20</td><td colspan="3">④ 합계 : ①+②+③=₩4,395,882</td><td colspan="3">④ 합계 : ①+②+③=₩4,430,000</td></tr>
<tr><td>상21</td><td colspan="3">(3) 납부세액 : ~ -₩4,395,882=₩4,874,118</td><td colspan="3">(3) 납부세액 : ~ -₩4,430,000=₩4,840,000</td></tr>
</table>